

## 뇌사 장기기증 절차



- 1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
- 2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(추정)
- 3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(1577-1458)으로 연락
- 4 뇌사판정 의료기관 등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확인
- 5 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판정 절차 진행 및 판정
- 6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
- 7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(장례절차 진행)

## 인체조직기증 절차



-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
- 2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사망(추정)
- 3 사후 15시간 내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(1577-1458) 으로 연락
- 4 발생의료기관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
- 5 조직기증지원기관 또는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
- 6 인체조직 채취
- 7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한 시신복원
- 8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(장례절차 진행)